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6
----------	-----

제출년월일 : 2005. 3.
제출자 : 영주시장

1. 제안이유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서별 업무 조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에 따른 기구조정 및 재난안전관리기구 등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신설기구 : 재난안전관리과, 영주시보건소봉현면지소 (안 제6조 및 별표 1)
- 나. 폐지기구 : 시민회관 (민간위탁)
- 다. 기구개편 및 업무기능 조정 (안 제5조·제6조 및 제12조)

1) 부서명칭변경

- 종합민원처리과 → 민원봉사과, 산림축산과 → 산림녹지과
농정과(농업기술센터) → 농축산과

2) 업무기능조정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추진하던 허가업무를 관리부서업무와 일원화)

- 환경보호과(배출시설허가업무), 산림녹지과(산지전용업무),
도시개발과(개발행위업무), 주택지적과(건축허가), 농축산과(농지전용업무)

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개정 으로 여유기구 신설 및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전환(안 제6조) ◦ 경영개발과(여유기구), 주민자치새마을과(한시기구 → 상시기구)

3. 자치법규안 : 붙임

4. 신구대비표 : 붙임

5. 참고자료

-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도자치행정과-10011, 04.12.20)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내지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 설치) 부시장 밑에 기획감사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을 둔다.

제5조(행정지원국) ①행정지원국에 총무과, 주민자치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를 둔다.

②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전, 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3. 공인관리 및 공무원 복무단속에 관한 사항
4. 읍·면·동 행정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 주요시책사업 추진 및 선거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보수, 임면, 상별에 관한 사항
7. 국제 및 국내도시간 교류 및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8. 공무국외여행 업무
9.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지도
10. 읍면동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
11. 새마을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2.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에 관한 사항
13. 건전생활 육성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
14. 체육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5.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액에 관한 사항
16. 세외수입 및 시금고에 관한 사항
17. 주택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
18. 세출예산의 경리, 계약에 관한 사항
19. 국·공유 및 시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20. 민원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1. 호적에 관한 사항
22.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항
23.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및 신고관리에 관한 사항
24. 차량등록(이륜차포함) 및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항
25.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26. 가정·아동·노인·여성·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27. 묘지 및 화장장에 관한 사항
28. 문화 및 예술에 관한 사항
29. 향교, 사찰, 종교에 관한 사항
30. 문화재 관리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31.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2. 시민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3.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여성복지회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6조(산업건설국) ① 산업건설국에는 경재교통과, 경영개발과(여유기구),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개발과, 주택지적과를 둔다.
 ② 산업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상표관련업무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및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4. 광공업, 물가, 가스, 연료 및 전기에 관한 사항
5. 고용촉진, 적업안정,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6.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7. 교통안전, 운수 및 차량에 관한 사항
8. 민자유치 및 경영개발에 관한 사항
9. 온천개발 및 풍기온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0. 인삼복합단지 추진에 관한 사항
11. 환경보전, 수질, 토양오염, 폐기물에 관한 사항
12. 공해 및 배출시설에 관한 사항
13.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사항
14. 생물종과 생태계 등의 보존관리 및 국립공원과의 협의업무

15. 산림관리, 조림, 양묘 및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
16. 자연휴양림 조성·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7. 도시공간 녹화 및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8. 도로·하천·소하천·공유수면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9. 지하수개발 및 농업용수 개발, 유자관리에 관한 사항
20. 농업정주권 개발에 관한 사항
21. 치수행정,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에 관한 사항
22. 지역방재 대책 및 재난관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3. 도로·교량·하천 등 시공·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4. 재난관리 및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25. 재난에 따른 복구지원 및 지역협력에 관한 사항
26. 민방위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27.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28. 도시개발 종합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9.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30. 건설업 면허 및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31. 공원,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32. 오지개발사업, 소도읍가꾸기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33. 세마을시설물관리 및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4. 국토이용 정보체계 토지종합전산망사업에 관한 사항
35. 주택시설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6.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관련 인·허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7. 택지조성 및 위반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
38. 지적 및 부동산관리, 공시지가관리에 관한 사항
39.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12조제3호중 “농산물”을 “농축산물”로 하고, 제5호 내지 제17호를 제7호 내지 제19호로 하며,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축산, 수의, 초지, 낙농, 사료 등에 관한 사항
6. 식육관련 인·허가에 관한 사항

제16조중 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며, 제7조제1항과 제9조제1항중 “지역보건법”을 “「지역 보건법」”으로 하고, 제7조제2항중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제9조제2항중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종합민원처리과는 민원봉사과로, 산림축산과는 산림녹지과로 하고, 농정과는 농축산과로 하며, 「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중 제3조제2항 제2호가목의 “정보통신담당관실 및 종합민원처리과”는 “정보통신담당관실”로 한다.

신·구 대비표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p><u>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 설치)</u></p> <p><u>부시장 밑에 기획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및 종합민원처리과를 둔다.</u></p> <p><u>제5조(행정지원국) ①행정지원국에 총무과, 주민자치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를 둔다.</u></p> <p><u>②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의전, 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u> <u>2.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u> <u>3. 공인관리 및 공무원 복무단속에 관한 사항</u> <u>4. 읍·면·동 행정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u> <u>5. 주요시책사업 추진 및 선거에 관한 사항</u> <u>6. 공무원 보수, 임면, 상벌에 관한 사항</u> <u>7. 국제 및 국내도시간 교류 및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u> <u>8. 공무국외여행 업무</u> <u>9.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지도</u> <u>10. 읍면동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u> <u>11. 새마을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u> <u>12.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에 관한 사항</u> <u>13. 건전생활 육성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u> <u>14. 민방위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u> <u>15.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u> <u>16. 채육전홍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u> <u>17.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액에 관한 사항</u> <u>18. 세외수입 및 시금고에 관한 사항</u> 	<p><u>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 설치)</u></p> <p><u>부시장 밑에 기획감사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을 둔다.</u></p> <p><u>제5조(행정지원국) ①행정지원국에 총무과, 주민자치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를 둔다.</u></p> <p><u>②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의전, 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u> <u>2.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u> <u>3. 공인관리 및 공무원 복무단속에 관한 사항</u> <u>4. 읍·면·동 행정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u> <u>5. 주요시책사업 추진 및 선거에 관한 사항</u> <u>6. 공무원 보수, 임면, 상벌에 관한 사항</u> <u>7. 국제 및 국내도시간 교류 및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u> <u>8. 공무국외여행 업무</u> <u>9.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지도</u> <u>10. 읍면동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u> <u>11. 새마을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u> <u>12.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에 관한 사항</u> <u>13. 건전생활 육성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u> <u>14. 체육전홍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u> <u>15.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액에 관한 사항</u> <u>16. 세외수입 및 시금고에 관한 사항</u> <u>17. 주택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u> <u>18. 세출예산의 경리, 계약에 관한 사항</u>

현 행	개 정 안
19. 세출예산의 경리, 계약에 관한 사항	19. 국·공유 및 시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20. 국·공유 및 시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20. 민원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1.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21. 호적에 관한 사항
22. 가정·아동·노인·여성·청소년 복지 에 관한 사항	22.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항
23. 묘지 및 화장장에 관한 사항	23.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및 신고관리에 관한 사항
24. 문화 및 예술에 관한 사항	24. 차량등록(이륜차포함) 및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항
25. 향교, 사찰, 종교에 관한 사항	25.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26. 문화재 관리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26. 가정·아동·노인·여성·청소년 복지 에 관한 사항
27.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7. 묘지 및 화장장에 관한 사항
28.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여성복지회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시민회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8. 문화 및 예술에 관한 사항
제6조(산업건설국) ①산업건설국에는 경제교 통과, 경영개발과,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주택지적과를 둔다.	제6조(산업건설국) ①산업건설국에는 경제교 통과, 경영개발과(여유기구),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개발과, 주택지적과를 둔다.
②산업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상표관련업무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및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②산업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상표관련업무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및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p>4. 광공업, 물가, 가스, 연료 및 전기에 관한 사항</p> <p>5. 고용촉진, 직업안정,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p> <p><u>6.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u></p> <p>7. 교통안전, 운수 및 차량에 관한 사항</p> <p>8. 민자유치 및 경영개발에 관한 사항</p> <p>9. 온천개발 및 풍기온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p> <p>10. 인삼복합단지 추진에 관한 사항</p> <p>11. 환경보전, 수질, 토양오염, 폐기물에 관한 사항</p> <p>12. 공해 및 배출시설에 관한 사항</p> <p>13.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사항</p> <p>14. 생물종과 생태계 등의 보존관리 및 국립공원과의 협의업무</p> <p>15. 산림관리, 조림, 양묘 및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p> <p>16. 자연휴양림 조성·운영관리에 관한 사항</p> <p>17. 도시공간 녹화 및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p> <p>18. 축산, 수의, 초지, 낙농, 사료 등에 관한 사항</p> <p>19. 식육관련 인·허가 및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p> <p>20. 도로·하천·소하천·공유수면 등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p> <p>21. 지하수개발 및 농업용수 개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22. 농업정주권 개발에 관한 사항</p> <p>23. 치수행정,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에 관한 사항</p> <p>24. 지역방재 대책 및 재난관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p>	<p>4. 광공업, 물가, 가스, 연료 및 전기에 관한 사항</p> <p>5. 고용촉진, 직업안정,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p> <p><u>6.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u></p> <p>7. 교통안전, 운수 및 차량에 관한 사항</p> <p>8. 민자유치 및 경영개발에 관한 사항</p> <p>9. 온천개발 및 풍기온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p> <p>10. 인삼복합단지 추진에 관한 사항</p> <p>11. 환경보전, 수질, 토양오염, 폐기물에 관한 사항</p> <p>12. 공해 및 배출시설에 관한 사항</p> <p>13.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사항</p> <p>14. 생물종과 생태계 등의 보존관리 및 국립공원과의 협의업무</p> <p>15. 산림관리, 조림, 양묘 및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p> <p>16. 자연휴양림 조성·운영관리에 관한 사항</p> <p>17. 도시공간 녹화 및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p> <p>18. 도로·하천·소하천·공유수면 등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p> <p>19. 지하수개발 및 농업용수 개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20. 농업정주권 개발에 관한 사항</p> <p>21. 치수행정,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에 관한 사항</p> <p>22. 지역방재 대책 및 재난관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p> <p>23. 도로·교량·하천 등 시공·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p>

현 행	개 정 안
25. 도로 · 교량 · 하천 등 시공 · 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4. 재난관리 및 빙재업무에 관한 사항
26. 도시개발 종합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5. 재난에 따른 복구지원 및 지역협력에 관한 사항
27.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6. 민방위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28. 건설업 면허 및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27.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29. 공원,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28. 도시개발 종합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0. 오지개발사업, 소도읍가꾸기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29.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31. 새마을시설물관리 및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0. 건설업 면허 및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32. 국토이용 정보체계 토지종합전산망사업에 관한 사항	31. 공원,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33. 주택시설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2. 오지개발사업, 소도읍가꾸기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34.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관련 인 · 허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3. 새마을시설물관리 및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5. 택지조성 및 위반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	34. 국토이용 정보체계 토지종합전산망사업에 관한 사항
36. 지적 및 부동산관리, 공시지가관리에 관한 사항	35. 주택시설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7.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36.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관련 인 · 허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소관업무) (생 략)	37. 택지조성 및 위반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
1.~2. (생 략)	38. 지적 및 부동산관리, 공시지가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산물 유통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	39.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4. (생 략)	
< 신 설 >	
< 신 설 >	
제12조(소관업무)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농축산물 -----	
4. (현행과 같음)	
5. 축산, 수의, 초지, 낙농, 사료 등에 관한 사항	
6. 식육관련 인 · 허가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5. (생 략)	7. (현행 5호와 같음)
6. (생 략)	8. (현행 6호와 같음)
7. (생 략)	9. (현행 7호와 같음)
8. (생 략)	10. (현행 8호와 같음)
9. (생 략)	11. (현행 9호와 같음)
10. (생 략)	12. (현행 10호와 같음)
11. (생 략)	13. (현행 11호와 같음)
12. (생 략)	14. (현행 12호와 같음)
13. (생 략)	15. (현행 13호와 같음)
14. (생 략)	16. (현행 14호와 같음)
15. (생 략)	17. (현행 15호와 같음)
16. (생 략)	18. (현행 16호와 같음)
17. (생 략)	19. (현행 17호와 같음)
제16조(소관사무) (생 략)	제16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6. 시민회관	< 삭제 >
가. 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대관 및 무대공연 관리	
다. 영사, 음향, 통신시설 유지관리	
라. 냉·난방 전기시설의 유지관리	
마. 회관 사용허가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바. 회관의 사용료 및 기타 제수입의 수납 등에 관한 사항	
사. 기타 회관사용에 관한 협조 사항	

<별지>

【별표1】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7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영주시보건소	영주시 휴천동 466-6번지	영주시 일원
영주시보건소풍기읍지소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576번지	풍기읍 일원
영주시보건소이산면지소	영주시 이산면 석포리 768-3번지	이산면 일원
영주시보건소평은면지소	영주시 평온면 금광리 230-7번지	평온면 일원
영주시보건소문수면지소	영주시 문수면 적동리 466-1번지	문수면 일원
영주시보건소장수면지소	영주시 장수면 반구리 1040-1번지	장수면 일원
영주시보건소안정면지소	영주시 안정면 신천리 75-2번지	안정면 일원
영주시보건소봉현면지소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 173-3번지	봉현면 일원
영주시보건소순흥면지소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314-4번지	순흥면 일원
영주시보건소단산면지소	영주시 단산면 옥대리 236-10번지	단산면 일원
영주시보건소부석면지소	영주시 부석면 소천리 445-4번지	부석면 일원
영주시이산면월림보건진료소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1151-1번지	두월리, 내령1리, 용상2리, 신천1리
영주시평은면평은리보건진료소	영주시 평온면 평은리 산113-1번지	평은리, 천본리
영주시문수면조제리보건진료소	영주시 문수면 조제리 546-7번지	조제리, 벌사2리
영주시장수면소룡리보건진료소	영주시 장수면 소룡리 432-3번지	소룡리, 호문2리
영주시장수면성곡리보건진료소	영주시 장수면 성곡리 553-1번지	성곡1·2리, 갈산1·2리
영주시장수면두전리보건진료소	영주시 장수면 두전리 534-4번지	두전1·2·4리
영주시안정면용산리보건진료소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 483-4번지	용산리, 여록리, 묵리
영주시안정면오계리보건진료소	영주시 안정면 오계리 418-4번지	오계리, 대평리, 단촌리
영주시봉현면노좌리보건진료소	영주시 봉현면 노좌리 201-5번지	노좌리, 하촌리, 유천리
영주시순흥면배점리보건진료소	영주시 순흥면 배점리 222-3번지	배점리, 덕현리, 내죽2리
영주시단산면구구리보건진료소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893-2번지	구구리, 사천리, 동원2리
영주시부석면임곡리보건진료소	영주시 부석면 임곡리 353-10번지	임곡리, 남대리, 북자리
영주시부석면상석리보건진료소	영주시 부석면 상석리 413-5번지	상석리, 감곡리, 보계리

【별표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4조 관련)

명 칭	위 치
영주시수도사업소	영주시 영주동 19-1번지
영주시환경사업소	영주시 적서동 472번지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2-8번지
영주시여성복지회관	영주시 영주동 479-2번지
영주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영주시 가흥동 산21-1번지

"위대한 경북 함께 뛰는 300만"



경상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통보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2983(2004. 12. 18)호와 관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 18603호)의 공포·시행(관보 제15875호, 2004. 12. 18)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을 불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지침의 준수·이행 등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아울러 각 시군의 재난기구 설치계획과 보정정원 초과 시군의 6급이하 정원신청은은 불임 「조직관리지침」 신청서식(불임 6, 불임 7)에 의거 2004. 12. 29까지 하여 주시고 또한 여유기구 조직개편상황을 불임 6호 서식에 의거 2005. 3. 2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 임 : 여유기구제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1 부 끝.

경상북도지사

관인생략

수신자 시장·군수

★지방행정주사 이세우 지방행정사무관 이인녕 자치행정과장 12/20 윤정용

협조자 지방행정주사보 이동욱 지방진선주사보 황진대 지방행정주사 차윤호

시행 자치행정과-10011 (2004. 12. 20.) 접수 총무과-8N ()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http://www.gb.go.kr>

전화 (053)950-3326 / 전송 (053)950-2548 / seawoo@gb.go.kr / 공개

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2004. 12. 18

행 정 자 치 부

◀ 목 차 ▶

I. 개정요지	1
II. 개정령의 주요내용 및 조직관리지침	2
1.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제 도입	2
2. 지방의회와 주민에 의한 자율관리시스템 강화	9
3. 재난관리조직 개편	12
4. 기타 지방이양 결정사항	16
III. 행정사항	17
※ 참고자료	18

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증개정령 시행지침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하여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방안을 마련
-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방재조직 보강 등 기구·정원기준 개선사항을 반영

I. 개정요지

□ 지방자치단체 여유기구제 도입

- 자치조직권 확대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범위의 기구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 부여
 - ▶ 시·도 1국2과(서울, 경기 1국3과), 시·군·구 1과(인구 50만명 이상 시 2과)

□ 자치조직권 강화에 상응하는 자율관리시스템 보강

- 지방의회 심의기능 강화
 - 직급별 정원을 조례(←규칙)에 규정, 기구·정원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 명시, 조직관련 규칙 제·개정안 지방의회 제출
- 지역주민의 통제 강화 : 조직관련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의무화 등

□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른 지방조직 정비 및 보강

- 시·도는 건설재난관리국 또는 소방본부 산하에 자연재해 업무 전담과를 설치(시·도에 조직편제 재량권 부여)
- 시·군·구는 현장대응능력의 중요성을 감안, 재난관리전담과 신설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이양 결정사항 반영

- 한시기구 설치 승인제도 폐지, 시·도 5급 이상 기술직렬 정원조정 승인제도 폐지

II. 개정령의 주요내용 및 조직관리지침

1.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제 도입

◀ 개정령 : 제6조의2 ▶

- ◇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일정한 범위이내에서 기구설치기준을 초과하여 본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조항 신설)
- ◇ 여유기구의 규모
 - 시·도 : 1국, 2과(서울·경기 : 1국, 3과)
 - 시·군·구 : 1과(인구 50만이상 시 : 2과)

□ 여유기구제의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조직설치·운영의 자율성 인정
 - 여유기구의 설치·폐지·전환 등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
- 법령에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는 본청기구 설치의 경작성을 일부 완화하여 조직운영의 탄력성·자율성 부여

□ 여유기구의 규모

시·도

- 1개 실·국(3급), 2개 과·담당관(4급)이내
 - 다만,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는 인구 1천만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과 추가 【1개 실·국(3급), 3개 과·담당관(4급)이내】
- 상시기구의 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과이상이 필요 (기구정원규정 제5조)하나, 여유기구는 그 특성상 최소한의 하부조직으로 2과 운영 가능

시·군·구

- 1개 과·담당관(5급)
 - 다만,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11개)는 대도시로서의 특수성(지방자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道 사무를 일부 직접 처리)과 지방자치법 제161조의2에 의한 대도시특례규정 등을 감안하여 1개 과를 추가하여 2개과 이내 설치 가능
 - ※ 인구50만명 이상의 시 현황('04. 1. 1 현재)
 - ▶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고양, 용인, 청주, 전주, 포항, 창원
 - 인구 50만명 이상의 자치구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와 비교하여 처리사무 등에서 차이가 나는 등 기구 규모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곤란하므로 1개 과·담당관만 설치 가능

□ 여유기구의 명칭

- 여유기구는 기구정원규정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시·도의 실·국·본부 및 과·담당관, 시·군·구의 실·국 및 실·과·담당관 과는 별도의 기구임을 감안하여
- 가급적 ○○추진단, ○○기획단 ○○반, ○○팀 등을 사용함으로써 기구명칭을 차동화하여 여유기구임을 표시

□ 여유기구의 설치 및 운영기준

-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 및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만 설치
 - 상시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여유기구 설치는 불가
- 기존의 기구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새로운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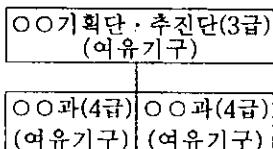
○ 본청에 한하여 설치·운영

- 여유기구는 법령에서 기구설치기준을 규정한 본청기구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청의 기능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만 설치·운영

- 소속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조합)] 의 행정수요 및 한시수요는 소속 행정기관의 신설 또는 기구보강 등으로 대처하되
- 향후, 본청 여유기구로 특색있는 행정수요 및 한시적 행정수요 처리가 가능함에도 기구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사업소 설치 등과 관련된 정원승인은 엄격히 제한할 계획임
(예시) 도시개발사업소, 문화권개발사업소 등

< 기구설치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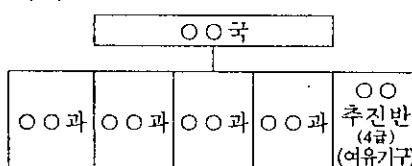
■ 1개의 국을 설치하여 산하에 2개의 과·담당관을 설치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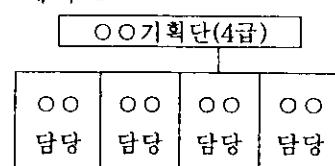
■ 국을 설치하지 않고 과·담당관만 설치하는 방안

- 여유기구인 국 설치의 수요는 없고 과·담당관 설치수요만 있는 경우 국을 설치하지 않고 여유기구인 과만을 설치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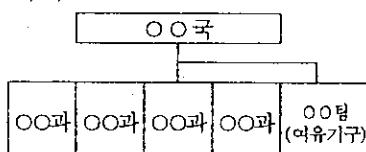
<예시 1>



<예시 2>



<예시 3>



<예시 4>



- 여유기구의 자율적·탄력적 운영
 - 여유기구의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폐지 또는 타 목적으로 탄력적으로 전환하여 여유기구의 상시 기구화 금지
- 자치단체기구설치조례·규칙의 『본청 章』에 기구의 명칭 및 사무분장 사항 등을 규정하되 여유기구임을 명시
※ 자치법규상 여유기구 규정방법 : 복임1 참조

□ 여유기구와 성격이 유사한 기설치된 한시기구는 여유 기구에 포함

- 본청에 기설치한 한시기구는 물론 여유기구와 성격이 유사한 사업소 등의 한시기구도 여유기구에 포함하여 운영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이익보다는 국가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한시기구는 여유기구 이외로 운영

시·도 : 7국 20과 설치·운영중

-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체 필요에 의해 설치한 한시기구(7국 20과)는 여유기구에 포함(전환)
 - 즉, 여유기구에 포함되는 한시기구를 제외한 기구만큼 여유 기구로 운영 가능
- 다만, 국가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한 20과(혁신분권담당관 16과, 서울시 민주공원추진반, 경기 주한미군이전추진단, 충북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제주 4·3사건처리지원사업소)는 여유기구에서 제외
※ 여유기구관련 시·도 정원승인내역 : 복임2 참조
※ 여유기구에 포함되는 시·도 한시기구 : 복임3 참조

시·군·구 : 2국 266과 설치·운영중

- 읍면동기능전환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231과)는 정책이 완료 단계에 있으므로 담당수준으로 축소하고, 여유기구로 운영
 - 지금까지 주민자치과 설치가 승인되지 않은 계룡시·증평군은 여유기구에 '해당되는 정원 5급 1명을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여유기구 운영
 - 포항시는 여유기구 Ceiling이 2과이나, 이미 승인된 읍면 동기능전환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를 위한 정원(5급 1명)을 제외하고, 금회 5급 1명을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여유기구를 운영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1425 ('04. 6. 29) 읍면동 기능전환 한시기구 처리지침 참조

- 또한,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체 필요에 의해 설치한 한시기구(2국 35과)는 여유기구에 포함
 - 기존 사업수행중임을 감안하여 현행 한시기구는 인정하되, 존속기한 종료후에는 더 이상의 시한연장없이 감축하고 그 기능은 여유기구에서 수행(한시정원도 당연히 감축)
 - 수원시·안양시·고양시·안산시·창원시는 여유기구 Ceiling이 2과이나, 기 설치운영중인 주민자치과를 제외하고, 현재 여유기구에 포함되는 한시기구가 없으므로 5급 1명을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여유기구 운영
 - 다만, 국가적 필요에 의하여 설치된 3과(평택시 교류사업단, 동두천 주한미군이전대책과, 영동군 노근리지원대책담당관)는 여유기구대상에서 제외

* 여유기구에 포함되는 시·군·구 한시기구 : 복임3 참조

□ 여유기구 설치에 따른 정원운영

- 여유기구제의 도입은 본청 기구설치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정원은 자체정원의 범위내에서 운영함이 원칙임
 - 현재 설치·운영 중인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전환할 경우 그 한시정원(시도 3·4급, 시군구 5급)은 여유기구 상한(Ceiling)에 포함됨
- ※ 여유기구에 포함되는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전환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 한시정원은 여유기구 Ceiling에 포함됨
- 여유기구에 해당하는 정원(시도 3·4급, 시군구 5급)은 Ceiling으로 하여 자율 활용
 - 여유기구에 해당하는 정원의 직렬은 자율책정
 - 별정직의 경우는 기구정원규정 제16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상기 Ceiling에는 한시기구 중 여유기구로 포함되는 기구의 해당 정원도 포함됨
- 여유기구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시도 5급이하(시군구 6급이하) 정원은 최대한 자체정원을 활용하여 운영
 - 여유기구 운영과 관련하여 현정원이 보정정원을 초과한 자치단체의 경우, 기구정원규정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최대한 정원승인을 억제할 계획임
- 여유기구 운영을 위한 정원도 각종 정원통계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

→

24

▶ 여유기구설치에 따른 정원운영(예시)

① 여유기구로 전환되는 한시기구가 없어 여유기구로 1국2과를 설치할 수 있는 ○○도의 경우

- 여유기구설치에 따른 정원 Ceiling 3급 1명, 4급 2명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기구설치 가능
- 5급이하는 최대한 자체정원 활용하되, 부득이 보정정원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승인을 받아 사용

② 여유기구로 전환되는 한시기구가 1국(3급), 4과(4급), 13담당(5급)이고, 한시정원이 40명(3급 1, 4급 4, 5급 13, 6급이하 22)으로 존속기한이 '05. 12. 31인 경우

- 여유기구로 전환하되, 여유기구설치에 따른 정원 Ceiling (3급 1명, 4급 2명)외에 37명(4급 2, 5급 13, 6급이하 22)은 존속기한이 끝나면 감축하여야 함

※ 존속기한이 종료되고 여유기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그때까지는 다른 여유기구는 설치할 수 없음(정원 Ceiling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

③ 여유기구 규모가 1국 2과인 ○○도의 경우 여유기구로 전환되는 한시기구가 1국(3급) 1과(4급)이고, 존속기한이 '05. 12. 31인 경우

- 여유기구로 전환되는 한시기구는 즉시 조례·규칙을 개정하여 여유기구로 전환할 수도 있고, 존속기한이 끝남과 동시에 여유기구로 전환할 수도 있음
- 이 경우는 어느 경우이든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기구는 1과(4급 1명)뿐이며 5급이하 한시정원이 있을 경우는 여유기구로 전환하든 존속기한이 끝남과 동시에 전환하든 존속기한이 끝남과 동시에 그 정원은 감축하여야 함

※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전환하였을 경우는 여유기구의 Ceiling인 1국(3급), 2과(4급)내에서 자율운영

- ④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한 주민자치과(존속기한 '05. 6. 30)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단(존속기한 '05.12.31)이 있을 경우
- 주민자치과를 존속기한내 담당급으로 축소 및 5급 정원을 여유 기구로 전환하고, ○○○사업단은 존속기한('05.12.31) 종료와 함께 한시기구·정원 폐지

2. 지방의회와 주민에 의한 자율관리시스템 강화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시 지방의회에 보고

◀ 개정령 : 제14조의2제5항 ▶

- ◇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수립시 지방의회 보고 의무화

- 인력운영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와의 협의에 앞서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

※ 해당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 보고

□ 조례규정 범위 확대

◀ 개정령 : 제21조제2항, 제3항 ▶

- ◇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 정원 총수 뿐만 아니라 직급별 정원도 정원관리기관별로 조례에 정함

17

- 이는 현정원의 변동없이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경우도 지방의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무분별한 조직팽창 현상을 지방에서 스스로 억제하는 자율관리가 가능토록 하려는 것임
- 직렬별 정원은 정원관리기관별로 규칙에 정함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방법 : 별첨4 참조

□ 기구·정원관련 소요예산 명시 의무화

◀ 개정령 : 제24조제1항 ▶

- ◇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안할 때에는 기구 및 정원의 조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적시하여야 함

-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기구 및 정원의 조정에 수반되는 연간 추가 소요비용을 적시
- 이는 조직확대의 필요성과 이에 수반되는 비용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유도하고 - 지방의회의 충실한 심의가 가능토록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 추가 소요비용 산정 기준 (소요비용에 포함할 예산과목)

- 인건비 :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 물건비 :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기산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이전경비 :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 지방예산과목구분과설정규정(훈령)의 분류에 따름

※ 비용소요추계서 작성 양식 : 별첨5 참조

□ 조직관련 규칙에 대한 사후심사제도 도입

◀ 개정령 제25조 ▶

- ◇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10일이내에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지방의회의 사후적 심의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기구 및 정원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시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 제출양식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안 또는 관보 공고문으로 함

- 그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지방의회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

※ 중앙부처도 대통령령·부령 제·개정시 10일이내에 국회에 제출
(국회법 제98조의2)

□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의무화

◀ 개정령 : 제26조제1항 및 제2항 ▶

- ◇ 추가적인 경비를 필요로 하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는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함

- ◇ 이 경우 기구 및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적시하여야 함

-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적인 경비가 수반되는 기구 및 정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입법예고

- 제정·개정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외

- 입법예고시 기구 및 정원의 조정으로 인한 추가 소요예산을 명시하되
 - 명시대상 및 양식은 조례 제안시 제출하는 내용과 동일

3. 재난관리조직 개편

□ 추진방향

- 제시된 모델안을 참고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자체개편 -
 - 『분권과 자율』의 기조에 따라 지자체별 소방·재난수요 및 재난관리능력을 감안하여 조직개편안을 선택
 - 시도는 3개 모델안중에서 선택, 시군구는 단일 표준안 참고
 - 조직확대 위주의 개편을 지양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편제
 - 지역별 자연재해, 화생방 등 재난수요와 특성을 감안하여 담당설치 및 상황관리체계 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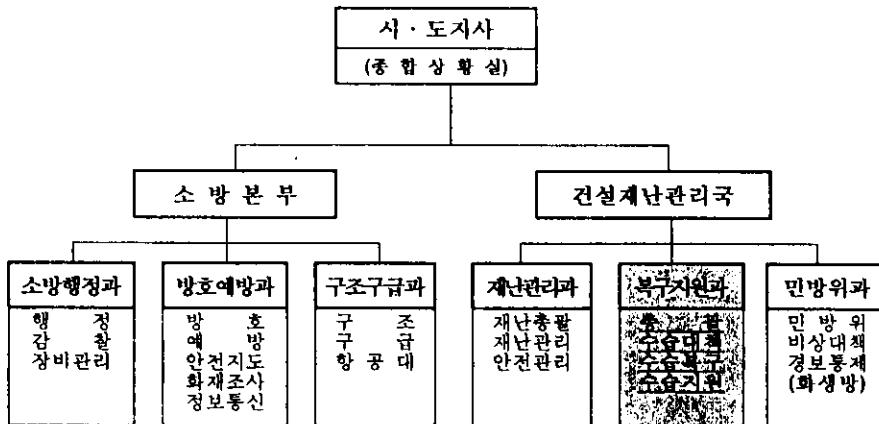
□ 시·도 재난관리 기구

- ◇ 재난업무를 전담하는 課를 신설하여 건설재난관리국 또는 소방 본부 소속으로 편재
 - 제시된 3개 모델안중에서 여건에 맞는 유형을 선정
- ◇ 시도별로 1課 4담당을 중설하되 사무분장·명칭 등은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
 - ※ 소요인력 : 17명(4급 1, 5급 4, 6급이하 12, 직렬은 자체조정)

① A형 : 재난-소방 분리형

- 자연재해 전담課를 신설하되, 소방본부는 현행체제 유지
- 건설교통국을 건설재난관리국으로 개편하여 건설업무와 재해·재난·민방위업무를 통합 편제
 - * 건설교통국에 課수가 많아 자연재해 전담課 설치가 곤란한 경우 건설업무 이외의 교통업무 등은 타 局으로 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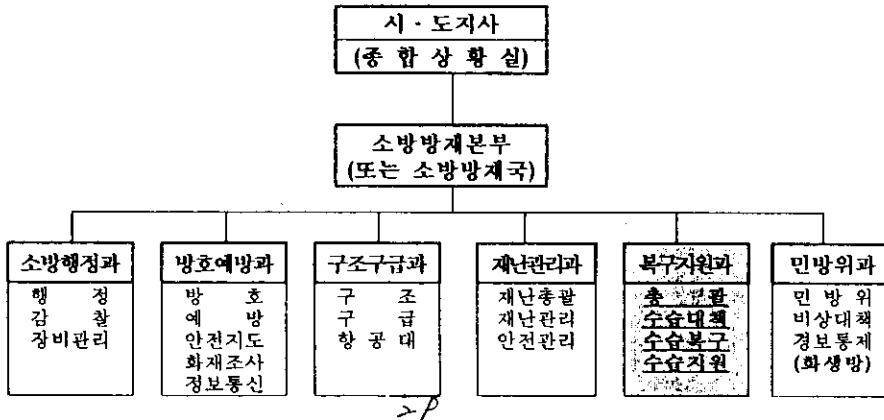
〈예시 모델〉



② B형 : 재난-소방 완전통합형

- 소방·재해·재난·민방위업무 통합 편제
- 소방본부를 소방방재본부로 개편하고 자연재해 전담課 신설

〈예시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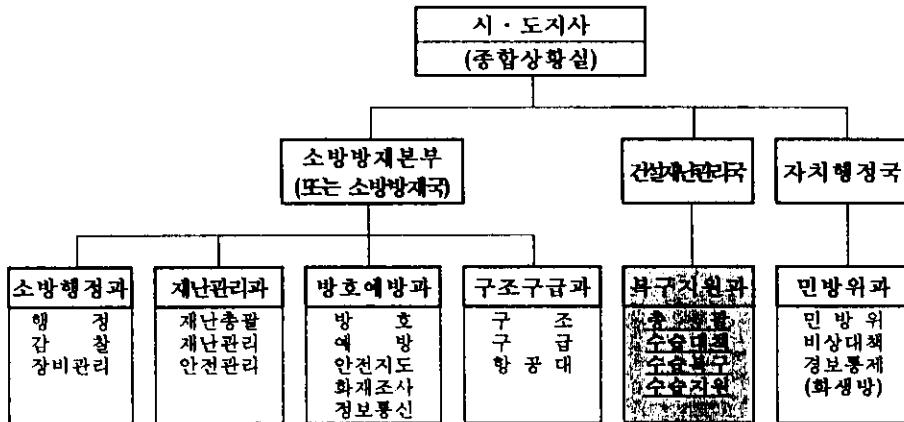


30

③ C형 : 재난-소방 부분통합형(도는 제외)

- 소방본부를 소방방재본부로 개편하여 재난업무를 흡수
- 건설교통국을 건설재난관리국으로 개편하고 자연재해 전담 팀을 신설하여 건설업무와 재해업무 통합 편제

〈예시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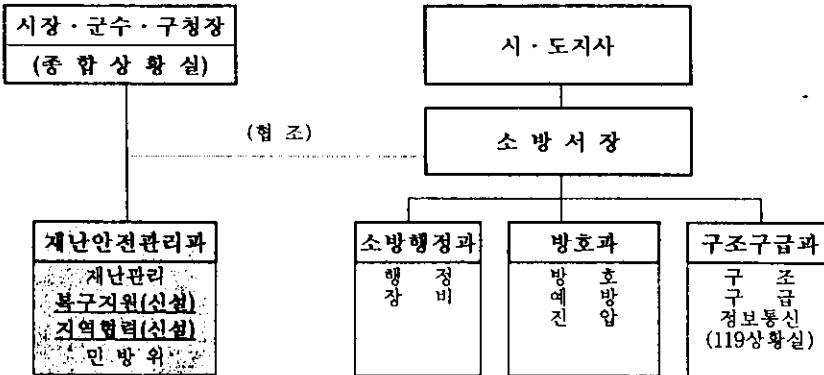


□ 시·군·구 재난관리 기구

- ◇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재난관리 전담과 신설(재난안전관리과)
- ◇ 1과 신설에 따른 하부조직으로 4담당 운영(2담당 신설)하되 사무분장 및 명칭 등은 자체 설정에 맞게 조정
 - 소요인력 : 9명(5급 1, 6급 2, 7급이하 6, 직렬은 자체조정)

-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2담당 증가 범위에서 재난관리 조직 개편
- 다만 행정구를 설치하지 않은 인구 50만 이상의 용인·창원시, 원천소재 경주시, 기장·울주·울진군은 특수성을 감안, 1담당 추가 인정(3담당 신설)
 - ※ 원천기능을 2담당으로 운영중인 영광군은 제외

〈기구 표준안〉



□ 재난관리조직 관련 기구·정원의 책정

- 이 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재난관리조직의 정원 중 신규로 책정되는 5급이상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여 책정
 - 서울특별시 : 지방4급 1명(지방5급은 자체 책정)
 - 시·도(서울 제외) : 지방4급 1, 지방5급 4명
 - 시·군·구 : 지방5급 1명

※ 직렬은 자치단체에 맞게 자체적으로 조정하되, 별정직(일반직·별정직 복수 포함)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6급이하 정원은 현정원이 보정정원 이내인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정원책정 보강
 - 이미 보정정원을 초과하였거나 재난관리기구 설치로 보정 정원을 초과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승인절차 이행

※ 우리부에서 전국 일괄승인 조치할 계획임

- 시군구의 담당급(6급)은 기구정원시행규칙 개정('04. 9. 24)에 따른 6급비율 조정 또는 무보직 정원을 활용
- 다만, 6급정원비율 확대(또는 확대계획)에도 불구하고, 6급정원의 증가가 1명도 없거나, 기존 행정직렬 무보직 6급정원이 없는 경우에는 6급정원 신청

⇒ 시도에서는 해당시군구의 정원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절차 수행

4. 기타 지방이양 결정사항

32

□ 한시기구 설치 승인제도 폐지

◀ 개정령 : 제6조제6항 삭제 ▶

- ◆ 한시기구 설치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승인없이 한시기구 설치 가능
- 다만, 금회 개정으로 여유기구를 새로 도입함에 따라 이미 운영중인 본청의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전환하는 등 적정한 조직관리가 요구되므로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시기구의 신규설치 지양
 -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영 제6조(한시기구의 설치 운영) 및 제19조(한시정원)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

* 특히, 표준정원(보정정원)을 초과한 한시정원 책정은 여전히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5급이상 기술직렬 직렬조정 승인제도 개선

◀ 개정령 : 제20조제3항 ▶

- ◆ 시·도지사가 5급이상 기술직렬의 공무원정원을 다른 직렬의 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 및 조직운영상 자율성 향상을 위하여 자율권을 인정하는 것이나,
- 기술직렬 공무원에 대한 우대정책 및 행정의 전문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남용되지 않아야 하므로 다음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조정가능

< 직렬조정 타당성 판단기준 >

- ▶ 직렬간 조정이 필요한 행정수요의 변동이 있어야 함
 - 종전 직렬이 수행하던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함
- ▶ 직렬조정의 불가피성
 -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렬조정 외에는 인력 확보가 곤란해야 함
- ▶ 인사해소 목적의 조정은 불가

- 기술직 공무원의 정원비율이 낮은 시·군·구의 경우 기술직 공무원의 감소 및 이에 따른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과 같이 시·도지사의 승인절차 존치

III. 행정사항

-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정원조정계획 수립 및 자치법규 개정
- 재난관리기구 설치 및 추진상황 보고
 - 재난관리기구 설치계획을 '04. 12. 29까지 제출

※ 보고서식 : 붙임6 참조
- 재난관리기구 설치관련 정원승인 신청
 - 보정정원초과 시군은 6급이하 정원에 대하여 '04.12.29까지 정원신청

※ 신청서식 : 붙임7 참조
- 여유기구 설치 및 추진상황 보고
 - 여유기구 조직개편상황을 '05. 3. 29까지 제출

※ 보고서식 : 「붙임6」의 “재난관리조직 기구표” 준용